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통일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6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6명)으로 환원하고,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정원 중 1명(9급 1명)의 직급을 사무운영서기보에서 행정서기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8”로 하고, 서기관 “12”를 “13”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3”을 “27”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4”를 “80”으로 한다.

별표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통일부령 제11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통일부령 제11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농림운영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통일부령 제11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삭 제>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생략)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7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 2의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으로 본다.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현행과 같음) ③ <삭 제>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9</u>	<u>8</u>	-1
서기관	<u>12</u>	<u>13</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 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	<u>33</u>	<u>27</u>	-6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74</u>	<u>80</u>	+6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정원표(제26조 관련)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	·	·	·
·	·	·	·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u>행정서기보</u>	<u><신 설></u>	<u>1</u>	+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 3] **삭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 4] **삭제**